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788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7889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0192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양성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김민주

변론종결 2022. 3. 24.

판결선고 2022. 4.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20192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으로부터 7,600만 원(=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 - 담보대출금 1억 6,9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고,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7,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형인 J이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이국현, 판사 김광진